

제 258 회 임 시 회
제4차행정자치위원회
2007년 3월 26일(月)

충청북도 사무의 위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

기 획 행 정 위 원 회
전문위원 연 기 봉

충청북도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 및 회부일자

가. 제출일자 : 2007년 3월 13일

나. 회부일자 : 2007년 3월 13일

3. 제안이유

가. 도정실황의 입체적 영상홍보화 및 유익한 영상콘텐츠 제작·공급 등을 목표로 추진중인 「인터넷디지털방송사업」을 전문인력과 방송시설을 갖춘 전문기관에 위탁하여

나. 양질의 대도민 멀티미디어 영상서비스와 지역내 영상미디어 산업육성을 도모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가. 정보통신담당관실 위탁사무에 「인터넷디지털방송사업」 신설

- 인터넷디지털방송시스템 구축 및 운영
- 영상콘텐츠 제작·공급
- 도정실황 입체적인 영상 홍보
- 기타 인터넷방송에 필요한 사항 등

5. 검토의견

본 개정조례안은 2006년 12월 14일 제255회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 위원회에서 심사하였으나 행정사무 민간위탁을 위한 사전절차인 수탁 기관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가 결여되었다는 사유로 부결되었던 조례안으로 부결사유를 보완하여 이번에 다시 제출된 조례안이 되겠음.

본 개정조례안은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인터넷 디지털방송¹⁾ 사업과 관련한 인터넷 디지털 방송시스템 구축 및 운영, 영상콘텐츠 제작·공급, 도정실황의 입체적인 영상 홍보, 기타 인터넷방송에 필요한 사항 등 4개업무를 전문인력과 인터넷방송시설을 갖추고 있는 충청북도 지식산업진흥원에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

본 개정조례안을 검토한바 인터넷 디지털 방송사업은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로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처리하고자 하는 취지에는 이견없음.

다만, 본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서는 업무처리 비용에 대한 분석 비교(초기시설비, 연간운영비에 대한 자체운영 및 위탁운영 비용)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, 위탁대상사무 중 “기타 인터넷방송에 필요한 사항”은 포괄적 표현으로 사무명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.

붙임 : 충청북도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1) 인터넷방송은 텍스트(Text), 그림(Image), 오디오(audio), 동영상(video) 등을 멀티미디어 콘텐츠로 가공, 압축하여 인터넷을 통해 이용자의 요구가 있을 때마다 실시간으로 전송하는 인터랙티브 서비스를 말한다.